

제2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16. 3. 11.

임실군의회회의장

1. 제정이유

-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나.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발굴과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등을 규정(안 제5조)
- 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6조)
- 마.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회의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심사예고 : 2016. . . .
- 라. 기 타 :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임실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치료비등)을 제7조의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범죄피해의 동일한 건으로 국가나 관련 단체에서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같은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실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같은조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임실군청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임실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임실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수립
3.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임실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시군 제정현황

| 시군명 | 조례명 | 제정일자 | 비고 |
|-----|-----------------|--------------|------|
| 군산시 |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 2015. 12. 15 | |
| 무주군 |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15. 11. 25 | |
| 장수군 |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15. 9. 1 | |
| 남원시 |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16. 1. 18 | 입법예고 |